



농산물 표준규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2-7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표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농산물 표준규격

2002년 11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규격, 포장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성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급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결점과,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라 함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4. "포장치수"라 함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5. "겉포장"이라 함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6. "속포장"이라 함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7. "포장재료"라 함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P.P, P.E 등을 말한다.

제3조(품위계측·감정방법) 등급규격의 항목별 계측 및 감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



2000-8호에 명시된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계측에 사용하는 표준체 규격은 KS A5101에 의한다.

제4조(표준규격) 농산물 종류별 표준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과실류의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과채류의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3. 엽채류 등 기타 채소류의 표준규격은 별표 3과 같다.
4. 서류의 표준규격은 별표 4와 같다.
5. 특작류의 표준규격은 별표 5와 같다.
6. 버섯류의 표준규격은 별표 6과 같다.
7. 곡류의 표준규격은 별표 7과 같다.
8. 화훼류의 표준규격은 별표 8과 같다.
9. 농산물 플라스틱상자와 다단식목재·금속재상자의 포장규격은 다음과 같다.

규격번호	포장재질	포장치수(mm)
9011	플라스틱(일 반)	550×366×350
9012	플라스틱(절첩식)	550×366×180
9013	플라스틱(절첩식)	550×366×230
9014	플라스틱(절첩식)	660×440×245
9015	다단식목재·금속재상자	1100×1100×200
9016	플라스틱	560×510×230
9017	플라스틱	560×510×330
9018	플라스틱	1010×360×240

제5조(포장치수의 적용) ① 겉포장의 길이 및 너비는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 계열치수 69개 모듈(1,100mm×1,100mm)과 별표9에 의한 골판지상자, 지대, P.E대·P.P대·그 물망의 농산물용 포장치수로 하고, 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한다.

② 속포장 치수는 사용자가 적정하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거래단위의 적용과 예외) 농산물의 포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의 거래단위를 적용하 되, 5kg 미만의 농산물을 포장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의 거래단위와 다른 거래단 위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포장치수의 허용범위) ①골판지상자의 포장치수 중 길이, 너비의 허용범위는 $\pm 2.5\%$ 로 한다.

②그물망, 직물제포대(P.P대), 폴리에틸렌대(P.E대)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길이의 $\pm 10\%$, 너비의 $\pm 10\text{mm}$, 지대의 경우에는 각각 길이·너비의 $\pm 5\text{mm}$ 로 한다.

③플라스틱상자의 포장치수의 허용범위는 각각 길이·너비·높이의 $\pm 3\text{mm}$ 로 한다.

제8조(포장방법)포장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물이 보이도록 개방형으로 포장할 수 있으나 적재하는데 용이하여야 한다.

제9조(포장재료 기준과 시험방법) 포장재료의 기준과 시험방법은 별표 10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10조(표준규격 특례) 표준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품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 중 유사품목 또는 품종의 표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규격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재배 또는 생산중에 있는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을 적용할 때에는 출하가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2003.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2-2호의 농산물 표준규격은 폐지한다.



[별표 1]

농산물 표준규격(고시 제4조 관련)

1. 과실류의 표준규격(1000)

규격번호	품목(품종)	규격내용
1011	후지	별 첨
1012	홍로	"
1013	조나골드	"
1014	쓰가루	"
1015	세계일고	"
1021	신진삼	"
1022	만산삼	"
1023	장강삼	"
1024	황주미	"
1025	주미	"
1031	창유천	"
1032	백향도	"
1033	방명홍	"
1034	홍도	"
1035	캠벨얼리	"
1041	캠벨얼리	"
1042	거봉	"
1043	마스캣베일리에이	"
1044	새단	"
1051	온주밀감	"
1052	청견	"
1053	한라봉	"
1054	진지향	"
1055	진지향	"
1061	금청매실	"
1071	단감(서촌조생)	"
1072	단감(부유)	"
1073	단감(대안단감)	"
1081	홍시(청도반시)	"
1082	홍시(고종시)	"
1083	홍시(갑주백목)	"
1091	뽕은감(청도반시)	"
1092	뽕은감(고종시)	"
1093	뽕은감(갑주백목)	"
1111	자두(대석조생)	"
1112	자두(포모사)	"
1121	참다래	"
1131	유자	"
1141	양앵두(버찌)	"
1151	앵두	"
1161	살구	"
1171	무화과(봉래시)	"
1172	무화과(마쓰이도후편)	"
1181	모석과	"
1191	석류	"



[별표 2]

2. 과채류의 표준규격(2000)

규격번호	품목(품종)	규격내용
2011	긴고추	별첨
2012	푼고추	"
2013	파리고추	"
2014	물고추(홍고추)	"
2021	다다기계	"
2022	취청계	"
2023	가시계	"
2031	애호박	"
2032	쥬키니	"
2033	푼호박	"
2034	단호박	"
2035	늪은호박	"
2041	가지	"
2051	일반토마토	"
2052	완숙토마토	"
2053	방울토마토	"
2054	송이토마토	"
2061	참외	"
2071	딸기	"
2081	수박	"
2082	조롱수박	"
2091	네트계	"
2092	백피계	"
2093	파파야계	"
2101	피만	"
2111	푼옥수수	"
2121	푼완두콩	"
2131	푼콩	"



[별표 3]

3. 업체류의 표준규격(3000)

규격번호	품목(품종)	규격내용
3011	양파	별 칩
3021	통마늘(난지형)	"
3022	통마늘(한지형)	"
3023	간마늘	"
3024	마늘종	"
3031	대 파	"
3032	쪽 파	"
3041	무	"
3042	열무	"
3043	알타리무	"
3051	결구배추	"
3052	얼갈이배추	"
3061	양배추	"
3071	당근	"
3081	시금치	"
3091	치마상추	"
3092	결구상추	"
3101	들깨잎	"
3111	맛부추	"
3112	좁부추	"
3121	마	"
3131	생강	"
3141	연근	"
3151	우영	"
3161	쑥갓	"
3171	미나리	"
3172	물미나리	"
3181	고구마순	"
3191	양미나리(셀러리)	"
3201	붉은양배추(루비볼)	"
3211	녹색꽃양배추(브룩볼리)	"
3221	꽃양배추(칼리플라워)	"
3231	향미나리(파슬리)	"
3241	케일	"
3251	신립초	"
3261	갓	"
3271	콩나물	"
3281	삼엽채	"
3291	청경채	"
3301	아욱	"
3311	근대	"
3321	엔디브	"
3331	치커리	"
3341	고들빼기	"
3351	머위	"
3361	달래	"



[별표 4]

4. 서류의 표준규격(4000)

규격번호	품목(품종)	규격내용
4011	감자	별 첨
4012	감자(대지)	"
4021	고구마	"

[별표 5]

5. 특작류의 표준규격(5000)

규격번호	품목(품종)	규격내용
5011	참 깨	별 첨
5021	피땅콩	"
5022	알땅콩	"
5031	들 깨	"

[별표 6]

6. 버섯류의 표준규격(6000)

규격번호	품목(품종)	규격내용
6011	느타리버섯	별 첨
6012	애느타리버섯	"
6021	양송이버섯	"
6031	팽이버섯	"
6041	영지버섯	"
6042	영지버섯(절편)	"
6051	동충하초	"



[별표 7]

7. 곡류의 표준규격(7000)

규격번호	품목(품종)	규격내용
7011	쌀	별첨
7012	잡쌀	"
7013	메현미	"
7014	찰현미	"
7021	겉보리쌀	"
7022	쌀보리쌀	"
7023	눌린보리쌀	"
7024	할맥	"
7031	차좁쌀	"
7032	메좁쌀	"
7041	울무쌀	"
7051	콩(가공용)	"
7052	콩(콩나물용)	"
7061	팥	"
7071	녹두(가공용)	"
7072	녹두(나물용)	"
7081	찰수수쌀	"
7091	찰기장쌀	"
7111	메밀	"
7121	옥수수(팝콘용)	"
7122	찰옥수수쌀	"



[별표 8]

8. 화훼류의 표준규격(8000)

규격번호	품목(품종)	규격내용
8011	국화(스탠다드)	별 첨
8012	국화(스프레이)	"
8021	카네이션(스탠다드)	"
8022	카네이션(스프레이)	"
8031	장미(스탠다드)	"
8031	장미(스프레이)	"
8041	백합(스탠다드)	"
8042	백합(스프레이)	"
8051	글라디올러스	"
8061	튜립	"
8071	거베라	"
8081	아이리스	"
8091	프리지아	"
8111	금어초	"
8121	스타티스	"
8131	해바라기	"
8141	칼라	"
8151	리시안사스	"
8161	안개초	"
8171	리아트리스	"
8181	극락조화	"
8191	스토크	"
8211	다알리아	"
8221	공작초	"



[별표 9]

농산물용 포장치수(고시 제5조 관련)

가. 골판지상자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1,300×350 * 화훼류에 한함
2	1,010×360 * 화훼류에 한함
3	825×275
4	554×246
5	545×335
6	520×280
7	510×360
8	500×370
9	450×305
10	440×310
11	430×320
12	423×254
13	420×325
14	415×260
15	400×300
16	391×317
17	366×260
18	350×350
19	350×250
20	345×250
21	330×256
22	300×175
23	220×165

나. 지대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650×420(절입 75)
2	550×300(절입 75)

다.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 그물망

일련번호	포장치수(길이mm×너비mm)
1	1470×700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별표 10]

포장재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제9조 관련)

1. 포장재료 기준

가. 골판지 상자

① 골판지 종류

구 분	골판지종류	파열강도	수 분
2kg이하	양면골판지 1종	6.5 kgf/cm ² 이상	10±2%
3~9kg	양면골판지 2종	8.0 kgf/cm ² 이상	
10~14kg	이중양면골판지 1종	8.0 kgf/cm ² 이상	
15~20kg	이중양면골판지 2종	10.0 kgf/cm ² 이상	

② 상자의 압축강도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협의하여 적정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③ 발수도

발수도	적용 대상 농산물
R ₂ 이상	건조된 농산물로서 P.E대 P.P대 등으로 속포장하여 내용물의 수분이 겉포장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농산물 (예: 쌀, 콩, 들깨, 참깨, 땅콩 등)
R ₄ 이상	① 수분증발과 호흡작용이 대체로 적은 농산물 (예: 사과, 배, 오이, 호박, 양파 등) ② 수분과 호흡작용이 과다하나 겉포장 보호를 위하여 P.E대 등으로 속포장한 농산물 (상추, 깻잎, 두릅 등)
R ₆ 이상	① 수분과 호흡작용이 과다하여 내용물의 수분이 겉포장 상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예: 감자, 고구마, 시금치, 파, 딸기 등) ② P.E대 등으로 속포장에도 불구하고 수분이 겉포장 상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산물 (예: 미나리 등)

나. P.E대(폴리에틸렌 대)

① 거래단위별 P.E 두께



구분	5kg	10kg	15kg	20kg
P.E 두께	0.03mm이상	0.05mm이상	0.07mm이상	0.10mm이상

② P.E 종류 및 두께에 대한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은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다. P.P대(직물제 포대)

섬 도 (데니아)	인장강도 (kgf)	봉합실인장강도 (kgf)	직조밀도 (홀/5cm)	기 타
900±10	3.0이상	4.0이상	20±2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이내로 접혀진 원사로 제작한다.

※ 원단은 KS A 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의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직조한다

라. 그물망

	5kg	10kg	15kg	20kg
무게	15g이상	25g이상	35g이상	45g이상

※ 원단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계이며, 메리야스상으로 직조한 것

마. 지대

- 원지의 품질은 KS M7501(크라프트지) 지대용 평량 80g/m²에 따르며, 거래단위 10kg이상은 3겹, 10kg미만은 2~3겹으로 한다.

바. 플라스틱 상자

- 재료는 KS M3154(폴리프로필렌 성형수지)에 규정된 2종 05500급이상 또는 KS M3353(폴리에틸렌 성형재료)의 3종 3~4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밀면 및 강구 낙하시험 결과 균열과 파손이 없어야 하고, 색견뢰도는 4급이상, 내하중 변형량은 10mm이내 이어야한다.
- 상자 압축강도
 상자 적재단수(2m÷골판지상자 높이-1)×거래단위무게(상자중량+내용물 중량)×5(안전계수)+내구연한 등을 감안한다

2.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포장재료의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과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다만 플라스틱 상자의 낙하시험 및 내하중 변형 시험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 ① 낙하 시험방법은 해당 거래단위 무게에 25%를 추가한 내용물을 담은 포장화물 공시상자 3개를 작성하여 낙하높이 1m, 낙하회수 3회로 시험한다.
- ② 내하중 변형시험은 해당 거래단위 무게에 25%를 추가한 내용물을 담은 포장화물 공시상자 3개를 작성하여 내하중 변형량을 측정하되, 측정방법은 받침틀(테두리 너비 $60\pm 2\text{mm}$) 위에 공시상자를 길이 방향으로 올려놓고 공시상자 바닥 면과 받침틀 밑바닥 면 사이에 다이얼게이지(0.01mm단위)를 설치하여 48시간 후 측정한다.